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05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재섭·엄태영·조경태

김기웅 · 신성범 · 서천호

김위상 · 정동만 · 박정하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 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징금) <u><신 설></u>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
	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
	하여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생 략)	$\underline{2}$ (현행 제 1 항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1항</u> 에	<u>③</u> <u>제2항</u>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1항</u> 에	<u>④</u> <u>제1항 또</u>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